



제438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연임 제한 등 〉

■ 신장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973호)

2026. 8.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 현 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연임제한 등	3
2. 겸임 허용 위임규정 삭제	9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신장식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6. 3. 31
3. 회 부 일 : 2026. 4.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특정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임기나 연임 횟수에 관하여는 「상법」상 이사 임기 규정 외에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예외적 겸직 가능 사유 중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지주회사 상근 임원의 겸직을 허용하는 것은 직무 전념 및 이해상충 방지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반복적인 연임으로 인한 권한 집중이 금융회사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금융지주회사의 상근 임원으로 하여금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을 겸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위임조항을 삭제하고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연임 제한 및 총 임기 등을 규정함

으로써 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및 제10조제2항 등).

Ⅲ. 검토의견

1.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연임제한 등(안 제5조의2 신설)

- 개정안은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연임을 한 차례만 허용하고, 총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임.

현행	개정안
제1절 임원의 <u>자격요건</u> <u><신설></u>	제1절 임원의 <u>자격요건 등</u> 제5조의2(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임기) 금융지주회사의 대표이사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총 임기는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부칙 제2조(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임되는 금융지주회사의 대표이사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연임 횟수 및 총 임기는 이 법 시행 전에 선임된 대표이사의 임기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상법」에 따르면, 대표이사는 이사회 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이사회 결의(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로 의결)로 선임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경우 주주총회의 일반결의(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의결)로 선임하고 있음. 대표이사의

연임 또한 이사회 결의 또는 주주총회의 일반결의로 이루어짐¹⁾²⁾.

이에 대하여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대표이사의 장기간 연임으로 권한이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금융회사는 「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다음 각 호의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감사위원회는 「상법」 제415조의2에 따른 감사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4. 1. 2.>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위험관리위원회
4. 보수위원회
5. 내부통제위원회

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제22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보수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위원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제22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점검·평가 및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4. 1. 2.>

④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24. 1. 2.>

⑤ 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로 한다. <개정 2024. 1. 2.>

제17조(임원후보추천위원회) 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임원(사외이사,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감사위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후보를 추천한다.

②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금융회사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임원을 선임하려는 경우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④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⑤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⑥ 제2항과 제16조제4항·제5항은 최초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를 구성하는 금융회사가 그 임원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 2.>

2) 「상법」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 행사) ①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②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0., 2025. 7. 22.>

③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2014. 5. 20.>

제389조(대표이사) 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③제208조제2항, 제209조, 제210조와 제386조의 규정은 대표이사에 준용한다. <개정 1962. 12. 12.>

제391조(이사회 결의방법) ①이사회 결의는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②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9. 12. 31., 2011. 4. 14.>

③제368조제3항 및 제371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4. 5. 20.>

집중되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한
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개정안은 금융지주회사의 대표이사가 연임을 하려는 경우에는 주
주총회의 특별결의로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의 지배
구조를 개선하여 공정하고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려는 취지임.

□ 이와 관련해서는 동 개정안 외에도, 금융지주회사의 대표이사의 연임
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개정안³⁾,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금융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대표이사의 연임을
하도록 하는 개정안⁴⁾ 등이 발의되어 있음.

<대표이사 선임·연임 관련 개정안 비교>

구분	현행	김현정의원안	신장식의원안	박홍배의원안
적용 대상	모든 금융회사	금융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선임	이사회 결의(상법 §389) 또는 주주총회 결의(정관에 서 정한 경우)			최초 선임시, 주주총회 결의 (일반결의)
연임	이사회 결의 또는 주주총회 결의 (정관에서 정한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 ⁵⁾	-	주주총회 특별결의
임기	3년 ⁶⁾		총6년(연임 포함)	-
연임 제한	-	-	1회만 허용	-

3) 2026. 2. 20. 김현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898

4) 2026. 4. 2. 박홍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8049

5) 「상법」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

□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첫째,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선임 및 연임에 관한 통제 강화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찬반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먼저,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지배력이 큰 상황에서 대표이사의 선임 및 연임 과정에서도 그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다는 점, 이로 인해 대표이사의 장기간 연임과 지배력 강화 등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표이사의 선임·연임 과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크다는 의견이 있음.

반면, 대표이사의 선임 및 연임 등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자율적인 영역이라는 점(현행 「상법」상 대표이사의 선임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회사가 정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금융지주의 경우 지난 2026. 3. 23. 대표이사를 주주총회 결의로 선임하고 2회 이상 연임하는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받도록 정관을 개정하였음), 대표이사가 회사 및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임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있음.

또한,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외국의 경우 이사의 연임 자체를 제한하는 사례는 찾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됨.

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6)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 ②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84. 4. 10.>

따라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과 금융회사의 경영상 자율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둘째, 금융지주회사는 은행지주회사와 비은행지주회사로 분류되는데, 지분 소유에 관하여 엄격한 규제를 받는 은행지주회사와 비은행지주회사를 구분하여 취급하는 방안에도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7)에 따라 동일인의 주식 보

7) 「금융지주회사법」

제8조(은행지주회사주식의 보유제한 등) ①동일인은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항 및 제8조의2제3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부 또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가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2. 금융지주회사가 지배하는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3. 지방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보유하는 경우
- ②동일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 상황 또는 주식보유비율의 변동 상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7. 31., 2015. 7. 24., 2021. 4. 20.>
1. 은행지주회사(지방은행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게 된 때
 2. 제1호에 해당하는 동일인이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최대주주가 된 때
 3. 제1호에 해당하는 동일인의 주식보유비율이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때
 4.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그 사원의 변동이 있는 때
 5.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한 투자목적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사원의 변동이 있는 때(해당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의 변동이 있는 때를 포함한다)
- ③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인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한도를 각각 초과할 때마다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은행업의 효율성과 건전성예의 기여가능성, 당해 은행지주회사 주주의 보유지분 분포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각호에서 정한 한도외에 별도의 구체적인 보유한도를 정하여 승인할 수 있으며, 동일인이 그 승인받은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한도(지방은행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서 정한 한도)
 2.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
 3.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3

유가 10% 이내로 제한되는 등 지분 소유가 분산되어 있어 대표이사가 회사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으므로, 대표이사의 연임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 중심의 규율체계로 강화할 필요성이 비은행지주회사의 경우보다 크다고 볼 여지가 있음.

□ 개정안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나, 적용 대상과 통제 수단 등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지배구조 선진화 TF’를 통해 세부 개선방안을 준비하고 있음.

□ 그 밖에 조문 정리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이사회 의장의 선임에 관한 규정인 제13조에 대표이사의 연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회사를 대표하는 대표이사와 이사회의 의장은 구분되므로, 대표이사의 연임 등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 참고로 금융지주회사는 총 10개사⁸⁾이고, 그 중 8개 은행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연임 관련 현황은 다음과 같음.

④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⑤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보고의 절차, 방법,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주식보유와 관련된 승인의 요건·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은행지주회사 등의 건전성을 저해할 위험성, 자산규모·재무상태의 적정성, 당해 은행지주회사등으로부터의 신용공여규모, 금융산업의 효율성과 건전성에의 기여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7. 31.>

⑥투자회사가 제3항에 따라 승인을 얻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 투자회사 및 그 투자회사의 법인이사인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8. 3., 2009. 7. 31.>

8) (은행지주) KB, 신한, 하나, 우리, NH, iM, BNK, JB, (비은행지주) 한국투자, 메리츠

<은행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연임 관련 통계>

회사	성명	임기	연임 여부
농협	이찬우	'25.2~'27.2	최초선임
하나	함영주	'22.3~'28.3	연임 1회
신한	진옥동	'23.3~'29.3	연임 1회
우리	임종룡	'23.3~'29.3	연임 1회
KB	양종희	'23.11~'26.11	최초선임
IM	황병우	'24.3.~'27.3.	최초선임
JB	김기홍	'19.3.~'28.3.	연임 2회
BNK	빈대인	'23.3.~'29.3.	연임 1회

* 자료: 금융위원회

2. 겸직 허용 위임규정 삭제(안 제10조제2항제4호)

☐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에 대하여 이해상충 또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저해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 겸직을 허용하고 있는 위임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임.

현행	개정안
제10조(겸직제한) ① (생략)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1. ~ 3. (생략) 4. 그 밖에 이해상충 또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저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④ (생략)	제10조(겸직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1. ~ 3. (현행과 같음) <삭제> ③·④ (현행과 같음)

□ 현행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9)에서는 금융회사 상근 임원의 겸직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예외적으로 일정한 출자 관계 등이 있는

9)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0조(겸직제한) ①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
3. 금융회사 해산 등의 사유로 청산인으로 선임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1.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인 경우: 그 은행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2. 해당 금융회사가 상호저축은행인 경우: 그 상호저축은행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상호저축은행의 상근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3. 해당 금융회사가 보험회사인 경우: 그 보험회사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아목까지 및 차목에 따른 금융기관의 상근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이해상충 또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저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은행의 임직원은 한국은행, 다른 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은행지주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은행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자은행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겸직할 수 있다.

다른 회사 임직원 겸직이 가능한 경우를 금융회사별로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겸직하려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이해상충 및 건전성 저해 우려가 적은 경우에는 보고)을 받도록 하고 있음.¹⁰⁾

현행법상 금융회사 상근 임원의 겸직 제한은 겸직으로 인한 이해상충 또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저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1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자회사 등에 대해서는 경영효율성 측면에서 각 금융회사별로 겸직을 허용하고 있고, 그 밖에 이해상충 및 금융회사의 건전성 저해 우려가 적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겸직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1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1조(겸직 승인 및 보고 등) ① 금융회사는 해당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른 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이해상충 방지 및 금융회사의 건전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이 조에서 “겸직기준”이라 한다)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해상충 또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저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겸직하는 회사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
2. 겸직하는 업무의 처리에 대한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해상충 방지 또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금융회사는 해당 금융회사의 임원이 다른 금융회사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제10조에 따른 겸직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겸직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고 방법 및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보고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 겸직을 제한하거나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임직원을 겸직하게 한 금융지주회사와 해당 자회사등은 금융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임직원 겸직으로 인한 이해상충 행위로 고객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융지주회사와 해당 자회사등이 임직원 겸직으로 인한 이해상충의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
2. 고객이 거래 당시에 임직원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 행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이에 동의한 경우
3. 그 밖에 금융지주회사와 해당 자회사등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제10조제2항제1호) 은행의 상근 임원은 그 은행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고, (제2호) 상호저축은행의 상근 임원은 그 상호저축은행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상호저축은행의 상근 임직원 겸직이 허용되며, (제3호) 보험회사의 상근 임원은 그 보험회사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음.

(제4호) 그 밖에 이해상충 또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저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겸직을 허용할 수 있는 위임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¹¹⁾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금융지주회사의 상근 임원도 이해상충 및 건전성 저해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을 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1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겸직 허용) ①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여신전문금융회사인 금융회사: 해당 금융회사의 고객과 이해가 상충되지 아니하고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른 회사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2. 금융지주회사인 금융회사: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고객과 이해가 상충되지 아니하고 그 자회사등의 건전한 경영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가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인 회사
 - 나.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계열회사
 - 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
 (이하 생략)

- 그리고, 현행법 제10조제4항¹²⁾에서는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등에 대한 지배·관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이 해당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등의 임직원 겸직을 허용하고 있음.

□ 개정안은 겸직 허용에 대해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현재 허용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지주회사 상근 임원의 겸직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해당 상근 임원이 직무에 전념하도록 하고, 이해상충을 방지하려는 취지임.

□ 그런데, 개정안과 같이 위임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경우, 시행령을 통하여 위임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어지므로, 개정안의 취지가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지주회사 상근 임원의 겸직을 제한하려는 것이라면,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 또는 시행령의 관련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겸직 허용 요건을 강화하거나 정비하는 방안 등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1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0조(겸직제한) ④ 다른 법령, 제6조(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 이 조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 및 그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겸직할 수 있다.

1.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이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2.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임직원이 다른 자회사등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업무를 겸직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변액보험계약에 관한 업무
 - 다. 그 밖에 자회사등의 고객과 이해가 상충하거나 해당 자회사등의 건전한 경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한편, 현행 시행령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 상근 임원의 겸직을 허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2016년 이 법이 제정될 당시 논의 내용도 함께 참고할 필요가 있음.

과거에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에는 타 업권과 달리 임원 겸직 제한 규정이 없어 겸직이 일반적으로 허용되었으나, 2016년 이 법의 제정 당시 금융회사 일반에 대한 겸직 금지 원칙 도입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도 겸직 금지 원칙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는데, 당시 법안 심사 과정에서, 수신 기능이 없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이해상충 등의 문제 소지가 적은 것으로 보아 시행령에서 예외적으로 겸직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된 바 있음¹³⁾.

- 개정안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의 경영관리를 주요업무로 영위한다는 점,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과거에 임원 겸직에 관한 제한 규정이 없었던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는 점, 시행령에서도 이해상충 및 건전 경영 저해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04

1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 등에 대한 법안심사(2013. 6. 21. 정무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 소위원회 회의록 p.6~p.7)